소규모펀드 수시공시

1. 대상 펀드

펀드명칭	발생일자	발생일 현재 설정액
 한국투자노무라일본밸류증권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A	2016-01-02	202,078,553
한국투자노무라일본밸류증권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A-e	2016-01-02	3,112,923,362
한국투자노무락일본밸류증권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C	2016-01-02	1,210,562,221
한국투자노무라일뵨밸류증권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C-e	2016-01-02	466,854,353

2. 발생일자 : 2016년 02월 01일

3. 소규모 펀드 수시공시 사유

-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93조(수시공시의 방법 등) 제3항 제 5호에 의거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(투자신탁의 해지) 제 1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시공시해야함
- 『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』에 따라 1개월 공시 1회 시행 후 해당 사실이 변경될 경우(원본액 50억 초과 등) 추가 공시

4. 소규모펀드 처리방안 : 해당사항 없음